

수원지방법원 2021. 6. 24 선고 2020나9342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1. 6. 24 선고 2020나93420 판결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10. 27 선고 2020가단52939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

담당변호사 김상훈

피고, 항소인 A

변론종결 2021. 6. 10.

판결선고 2021. 6. 24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10. 27. 선고 2020가단52939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평택시 B 임야 288㎡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19. 7. 2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9. 7. 3. 접수 제443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광진, 판사 이효진, 판사 이국현